[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공고 안내문]

2021 위드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공모

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(이하 위드유 센터)는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지원 공백 분야를 해소하고,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

1. 사업명

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

2. 지원개요

가. 사업기간 : 2021년 3월 ~ 11월 (*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)
나. 접수기간 : 2021년 2월 15일(월) ~ 26일(금) 18:00까지
다. 지원대상 :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
*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,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
라. 지원내용 :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

2. 사업지원규모(총 예산 3,600만원)

구분	사업내용	지원 규모
사업 분야	**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** ①지원범위 : 사내신고, 고용노동부 진정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,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신청 등 ②지원대상: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	기관당 최대 1,800만원

* 최종 지원 예산은 심의·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감액조정 될 수 있음
* 예산 항목 관련 자세한 내용은 [첨부1] 예산집행지침 참조

4. 지원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1년 2월 15일(월) ~ 26일(금) 18:00까지
나. 접수방법 : 위드유 센터 홈페이지 (http://www.seoulwithu.kr)에 접속하여 지원사업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접수
① 이메일접수 : withu@seoulwithu.kr로 제출 서류를 첨부 문서로 첨부하여 전송
* 메일제목 : [법률동행지원사업] 지원기관/단체명
다. 제출서류
① 지원사업 신청서 (붙임 신청서류 포함) 원본 1부 * 파일명 : [법률동행지원사업] 지원기관/단체명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③ 단체별 설립 증빙서류 사본
* 법인 및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설립허가증, 고유번호증 등

5. 지원내용

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	**■ 법률·동행 지원 사업** ①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법률전문가(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) 선임 지원 → 상담(전화, 면접), 서면(진정서, 이유서, 회사진술서 등)제출 및 검토,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,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등 ② 피해자 상담(전화, 면접)을 진행하고, 전문가/관련 기관 섭외 및 연계하는 상담활동가 활동비 지원 ③ 지원범위 : 사내신고, 고용노동부 진정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,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신청

6. 진행일정

구분	일정
사업공고	2월 15일(월)
접수기간	2월 15일(월) ~ 26일(금) 18:00시 까지
최종 선정결과 발표	3월 12일(금) *예정
협약식 및 OT	3월 19일(금) *예정
사업기간	3월 22일(월)~11월 30일(화)
중간점검	6월 21일(월)~30일(수) *예정
지원금 집행종료	11월 30일(화)
결과보고서 마감	12월 10일(금)

* 세부 진행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7. 심사 기준 및 절차

가. 심사기준

구분	내용
사업수행경험	-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지원활동 및 사업 운영 경험 -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활동 및 사업 운영 경험
사업계획과 예산타당성	- 활동(사업) 계획 및 운영성과의 내용 적합성 -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
사업 기대효과	-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지원 기반 강화

나. 심사절차 : 신청접수 ▶ 서류심사 ▶ 최종선정

* 심사위원은 내/외부 전문가로 별도 구성

다. 최종 선정결과 발표 : 3월 12일(금) 예정

*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withu.kr), SNS 공지 및 개별통보

8. 사업비 집행, 사업평가 및 정산

가. 선정 발표 이후,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와 선정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, 최종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
나. 사업비는 매월 20일까지 증빙서류 취합 후, 위드유 센터에서 직접 집행

다.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회계 정산 보고서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

9. 유의사항

가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나.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다.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아 제출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라.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 시,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비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
*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*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

마.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

10. 문의

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

전화 02-771-7770 (내선번호 301)

이메일 withu@seoulwithu.kr (평일 9:00 – 18:00)

1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

○ 사업비 예산항목은 법률 전문가(변호사 또는 노무사)선임비, 상담활동가 활동비로 구분됩니다.

※ 예산편성 기준표

항목	내용(세목)
사업비	법률전문가(변호사 또는 노무사)선임비, 상담활동가 활동비

○ **법률동행지원사례 1건당 각 1명의 법률전문가(변호사 또는 노무사) 선임비와 상담활동가 활동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.**

*** 법률·동행 지원사업 1건 : 법률전문가 1인 1,200,000원 + 상담활동가 1인 300,000원 = 1,500,000원**

○ 사업비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(세부산출근거 작성)해야 하며,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.

※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,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(단가x수량x횟수=금액) 제시

○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업비 교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.

2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

1. 사업비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

가. 법률전문가(변호사 또는 노무사) 선임비

구분	지급 기준	비고
법률전문가(변호사 또는 노무사) 선임비	1건 : 1,200,000 * 1,200,000 x 1인 x 1건 = 1,200,000 - 상담(전화, 면접) - 서면(진정서, 이유서, 회사진술서) 제출 및 검토 -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- 노동부 전화, 방문, 상담 및 협상	

※ 법률·동행 지원사업 1건에 변호사와 노무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 없습니다.

※ 법률·동행 지원사업 1건에 법률전문가(변호사 또는 노무사) 1명, 상담활동가 1명 각 1명씩 선임 가능합니다.

*** 법률·동행 지원사업 1건 : 법률전문가 1인 1,200,000원 + 상담활동가 1인 300,000원 = 1,500,000원**

나. 상담활동가 활동비

구분	지급 기준	비고
상담활동가 활동비	1건 : 300,000 * 300,000 x 1인 x 1건 = 300,000 - 상담(전화, 면접) - 전문가/관련기관 섭외 및 연계	

※ 상담활동가는 피해자 상담(전화, 면접)을 진행하고, 전문가/관련기관 섭외 및 연계하는 활동가입니다.

※ 법률·동행 지원사업 1건에 법률전문가(변호사 또는 노무사) 1명, 상담활동가 1명 각 1명씩 선임 가능합니다.

*** 법률·동행 지원사업 1건 : 법률전문가 1인 1,200,000원 + 상담활동가 1인 300,000원 = 1,500,000원**